

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

제정 2008년 11월 01일
개정 2009년 11월 01일, 개정 2012년 11월 01일, 개정 2015년 12월 01일

소관부서 : 대학원교학팀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(개정 2009.10.01., 개정 2015.12.01)

제 2조 (종류 및 자격) ①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하며,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.

③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와 관련된 관계분야의 학식을 종합평가하는 데 있다.

제 3조 (응시자격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

종합시험 : 3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완료하고 1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
(개정 2015.12.01.)

2. 박사학위과정

가. 외국어시험 : 2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완료한 학생(개정 2015.12.01.)

나. 종합시험 : 3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완료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(개정 2015.12.01.)

제 4조 (응시절차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학과(전공)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09.10.01., 2015.12.01.)

제 5조 (응시료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12.01.)

제 6조 (시험시기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 초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.

제 7조 (시험과목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

종합시험은 해당 전공과목과 공통과목으로 구성하며, 각 학과(전공)별로 지정한 종합시험 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.

2. 박사학위과정

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, 독어, 불어, 중국어, 일어, 한국어(외국인에 한함) 중에서 1종의 외국어로 하며, 종합시험은 각 학과(전공)별로 지정한 종합시험 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. (개정 2009.10.01)

제 8조 (시험방법) ①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

1. TOEFL, TOEIC, TEPS의 취득점수가 다음과 같이 인정 점수 이상이면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TOEFL의 경우 CBT 및 PBT 점수는 IBT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. (개정 2015.12.01.)

과정	TOEIC	TOEFL(IBT)	TEPS
박사	650	94	720

2. CHA 자격증을 취득하면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3. 조리기능장을 취득하면 관광대학원 외식창업경영전공 및 조리예술전공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4. 미용기능장을 취득하면 미용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5. 교통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과대학원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③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시험은 자국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로도 실시할 수 있으며, 제2외국어 시험의 경우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다. (조 개정 2012.11.01.)

제 9조 (시험위원)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을 이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위촉하여 출제 및 채점을 의뢰한다.

제10조 (합격판정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을 합격으로 한다.

제11조 (재응시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서 각 과목의 100점 만점에 서 70점 이상을 얻은 과목은 합격으로 하고,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12조 (결과보고)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.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2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